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7.

발 의 자 : 정연욱 · 박성훈 · 김기현
박수민 · 이현승 · 김도읍
박정훈 · 박충권 · 이종배
서명옥 · 엄태영 · 김재섭
서지영 · 정동만 · 김미애
박정하 · 이주영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, 기본계획의 수립,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이스포츠대회의 육성·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·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,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

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) ①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
2.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
3. 이스포츠 단체 육성·지원
4.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사·연구
5.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과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⑤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) ①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 <u>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</u> <u>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u> <u>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u> <u>1.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</u> <u>2.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</u> <u>3. 이스포츠 단체 육성 · 지원</u> <u>4.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사 · 연구</u> <u>5.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과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</u>

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⑤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